

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	
① 통계작성 지정기관	명 칭		
	주 소		
② 통계 작성 현황	통계의 명칭	통계의 종류	통계작성 승인(협의)번호
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근거 및 이유	근 거		
	이 유		

「통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데이터처장

관인

작성방법

- ② 통계작성 현황: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명칭, 통계의 종류(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) 및 통계작성 승인(협의) 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사유: 「통계법」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적습니다.
1.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·변경 요구, 그 밖에 통계의 작성·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 2.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
 4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
 5.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※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